

**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('17~'21)**  
**주요 변경사항 설명자료**

**2019. 3**

**교통안전복지과**

## I. 목표 변경

(당초)	(변경)
◇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 향상(72.5→81.4%)	◇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 향상(72.5→81.4%) · 교통수단 83%, 여객시설 79%, 보행환경 81% 달성
◇ 저상버스 보급률 42% 달성	◇ 교통약자 이동수단 보급 확대 · 저상버스 보급률 42% 달성
◇ 특별교통수단 보급 전지역 법정 기준 100% 달성	·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대(2,697→4,594대) 및 기준대비 91% 보급 · 휠체어 고속·시외버스 200대 및 터미널 50개 개조

## II. 주요 추진과제 (보완 및 신규과제)

### □ 저상버스 보급 확대 및 편의시설 개선

- 기존 저상버스를 대·폐차하는 경우, 저상버스로만 교체하도록 의무화 추진('19년 교통약자법 개정)
  - 저상버스 고장, 차령(11년) 도래 시 일반버스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아 보급률 확대('18년 25%, '21년 목표 42%)에 차질이 우려되어 개선 필요
    - \* '18년부터 매년 차령 도래한 200~300대 수준의 대·폐차 물량 발생 예상
- 저상버스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버스 내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일 수 있는 표준모델 마련 및 이동편의시설 기준 개정('19년)
  - 좌석배려 유도를 위해 휠체어 좌석공간(2개)내 의자를 '접이식(평시 접혀있는 상태)'으로 대체하고, 안내방송 및 경사판 등 개선('20년~)

□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 및 광역이동 지원

- 장애인 등급제 개편('19.6, 복지부)에 따른 대상 증가 등 감안, 법정 대수 개편\* 및 연차별 보급계획 변경('22년까지 보급률 100% 목표)

\* (대상) 1,2등급 장애인 → 중증(1~3등급) 장애인(단, 3등급은 보행장애 한정)  
 (대수) 2,697대(200명당 1대) → 4,594대(증 70%, 150명당 1대) 조정 검토 중

기준	현행 (200명당 1대)	➔	개선안 (150명당 1대)
법정 대수	$\frac{539,388\text{명}}{200\text{명/대}} = 2,697\text{대}$	➔	$\frac{689,137\text{명}}{150\text{명/대}} = 4,594\text{대}$ (1,897대 추가)

- 지역간 이동서비스 연계를 위한 道 단위 광역 이동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관련 법령 개정('19년 교통약자법 개정)

- 지자체간 차량 공공배차 및 서비스 권역 통합 운영을 고려하여 이동지원센터 표준플랫폼\* 확대 보급('20년~)

\* 개발 중인 표준플랫폼 실증을 위해 테스트베드('19.2~'19.9, 전주↔완주) 구축·운영

- 특별교통수단 이용 불편과 지역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「표준조례」 적극 시행('18.9), 지자체 조례 제·개정('19.上)

□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·시외버스 도입 및 확대

- 본 사업 이전 적합성 점검 및 개선사항 도출 등을 위한 시범사업 운행('19.10~12월) 추진

\* 휠체어 승강설비·고정장치 등 차량 개조, 버스터미널·휴게소 시설 개선

- 이용빈도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터미널 시설 개선 및 차량 개조\* 계획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('20년~)

\* 차량개조 : '20~'22년간 300대(총 120억원, 국비:지방비=50:50) 지원 예정

□ BF(Barrier-Free) 인증 활성화

-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이 신설하는 여객시설 등에 대한 BF 인증 의무화 추진('19년 교통약자법 개정)

< BF 인증 의무규정 비교표 >

구분	교통약자법	장애인등편의법
설치주체	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	국가 및 지자체
대상시설	신축 여객시설	신축 공공건축물

- 인증 의무 범위(국가 등이 신설하는 여객시설에 한정)를 중장기적으로 확대 검토(교통수단·도로·지역, 증개축, 민간 시설물 등)

□ 버스정류장 개선

-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승·하차를 위해 휠체어 유효 폭 확보\*, 탑승위치 표시\*\* 등 버스정류장 표준화('20년~)

\* 휠체어 폭 등을 감안하여 정류장 입구 폭, 장애물/단차 등 제거한 표준형 마련

\*\* 이용자는 정류장내 장애인 탑승구역내 위치, 운전자는 탑승구역 확인 후 출발

- 시각장애인, 노약자 등의 안전한 승하차 유도를 위한 탑승안내 시스템 도입 추진('20년~)

\* 핸드폰 등 활용하여 버스운전자에 미리 탑승 요청, 승하차 시간배려 등 편의 제공

\*\* 국토부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해 공동 시범사업 추진(19년, 국토부/과기부/안산시)

※ 교통약자는 정류장에 설치된 승차지원 단말기 통해 승하차 대기상황을 전송

⇒ 버스기사는 버스내 음성안내기를 통해 교통약자 대기상황을 인지

⇒ 버스기사는 승하차시 충분한 시간동안 출입문개방 등 지원



▲ 지정승차용: 대기/예약 위치지정

▲ 승차장 위치 안내기: 탑승위치알림

▲ 버스음성 안내기: 음성안내방송

▲ 승차용 대기용 버스도착시 알림

## □ 항공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개선

- 장애인,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「**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(고시)**」 제정('19년)

\* 「항공사업법」 개정('19)을 통해 편의기준 근거 마련, 위반 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

\*\* 편의기준 구체적 사항은 장애인·소비자단체, 항공사·공항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

- 교통약자 **탑승교 우선배정** 또는 **승강설비 제공**을 의무화하여 승·하기 시 불편을 줄이고, **이동 보조** 등 기내 필수서비스 규정

## □ 서비스교육 의무화

- **운전자 및 승무원 대상 서비스교육 의무화**('19년 교통약자법 개정), 서비스현장 제정 및 종사자 전문교육과정 운영('20년)

- 교통약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현행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만 의무화된 교육이수를 전체 운전자 및 승무원으로 확대

## □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정비

- 기준적합성\* 심사, 시정명령 등 **행정지도 매뉴얼**을 개발('19년)하고, 「**이행강제금 산정에 관한 기준(고시)**」 제정('19년)

\* 이동편의시설을 설치 전, 설계도 등을 통해 기준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재설치하기 위한 제도이나, 교통행정기관 담당자의 전문지식 부족

-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에게 시정명령,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나,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은 고시로 정함